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
2. 건　　명 :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3. 안 건 요 지 : 별　　첨

4. 검 토 의 견 : 별　　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　5월 20일

행 정 자 치 위 원 회

전문위원　박 춘 용

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9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4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1. 제안이유

미술관 무료관람 확대를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상표등록 지정상품 판매의 명문화를 통한 지역문화상품의 산업화 등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관람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함(안 제6조제1항).
나. 무료관람의 날 지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제2항).
다. 상표등록 지정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의2).

3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 안은

「장애인동반자 1인」, 「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」, 「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」를 관람료 면제 대상자로 추가하고, 무료관람의 날을 지정 운영하며, 상표등록 지정상품 판매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

○ **본 개정 조례 안 검토결과**

장애인 편의도모, 명예시민 예우강화,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,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이응노 미술관 등 지역특화 미술상품의 산업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됨.